

「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1월 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6년 1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6년 1월 1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- 군민대상 심사위원의 개선의견을 검토·반영하고 포상 및 군민 대상 시상을 위한 위원회 관련 절차와 조례 내 일부 용어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평창군의 원활한 포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< 군민대상 심사위원 주요 개선의견 >

- (문화/체육부문 분할) 각 분야의 고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(단체 차원 접수 제한) 개인-단체 후보 간 경쟁은 불공평할 수 밖에 없고, 단체 간 과열 경쟁·갈등 조장 가능성이 있으며, 미선정에 따른 단체 사기 저하, '돌려먹기 식' 선정 의혹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나. 주요내용

○ 용어 정비: 안 제5조, 제6조의2, 제7조의2, 제7조의3, 제8조 등

- (기존) 각호의 1 → (개정) 각 호의 어느 하나

- (기존) 범위안에서 → (개정) 범위에서

○ 군민대상 관련 개선의견 반영: 안 제7조의2, 제9조의3

- 수상부문 세분화: (기존) 문화체육부문 → (개정) 문화예술부문 / 체육부문

- 군민대상 수상단위 변경: (기존) 개인 또는 단체 → (개정) 개인

- 군민대상심사위원 증원: (기존) 5명 ~ 7명 → (개정) 7명 ~ 9명

○ 위원회 관련 조항 분리·신설 및 위원 변경: 안 제9조2 ~ 제9조의3

- (신설) 제9조의2(공적심사위원회), 제9조의3(군민대상심사위원회)

※ 기존 제9조(포상절차) 내 관련 항 분리 및 조 신설

- 공적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변경

(기존) 포상업무 담당 국장 → (개정)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최명순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」 1부.

2. 「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6. 01. 09.
- 회부일자 : 2026. 01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1. 19.

2. 제안이유

- 군민대상 심사위원의 개선의견을 검토·반영하고 포상 및 군민 대상 시상을 위한 위원회 관련 절차와 조례 내 일부 용어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평창군의 원활한 포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< 군민대상 심사위원 주요 개선의견 >

- (문화/체육부문 분할) 각 분야의 고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(단체 차원 접수 제한) 개인-단체 후보 간 경쟁은 불공평할 수 밖에 없고, 단체 간 과열 경쟁·갈등 조장 가능성이 있으며, 미선정에 따른 단체 사기 저하, ‘돌려먹기 식’ 선정 의혹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3. 주요내용

- 용어 정비: 안 제5조, 제6조의2, 제7조의2, 제7조의3, 제8조 등
 - (기존) 각호의 1 → (개정) 각 호의 어느 하나
 - (기존) 범위안에서 → (개정) 범위에서
- 군민대상 관련 개선의견 반영: 안 제7조의2, 제9조의3
 - 수상부문 세분화: (기존) 문화체육부문 → (개정) 문화예술부문 / 체육부문
 - 군민대상 수상단위 변경: (기존) 개인 또는 단체 → (개정) 개인
 - 군민대상심사위원 증원: (기존) 5명 ~ 7명 → (개정) 7명 ~ 9명
- 위원회 관련 조항 분리·신설 및 위원 변경: 안 제9조2 ~ 제9조의3
 - (신설) 제9조의2(공적심사위원회), 제9조의3(군민대상심사위원회)
 - ※ 기존 제9조(포상절차) 내 관련 항 분리 및 조 신설
 - 공적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변경
 - (기존) 포상업무 담당 국장 → (개정)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

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자구 수정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고, 군민대상 부문 및 심사위원회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용어 정비 내용으로는 안 제5조(표창장)에서 기존 “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” 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” 로,
- 안 제6조의2(공로장)에서 기존 “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” 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” 로,
- 안 제7조의2제2항 “다음 각호의” 를 “다음 각 호의” 로 하고,
- 안 제7조의3에서 “각호의 1에” 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 로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꿈.
- 안 제8조제1항에서 “제3호서식으로 한다” 에서 “제3호서식에 따른다” 로 같은 조 제3항에서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 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함.

※ ‘범위’ 는 ‘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’ 를 뜻하는데, 여기에는 ‘안’ 의 뜻이 없으므로 ‘범위 안’ 을 의미가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는 없지만, ‘예산의 범위에서’ 만으로 충분히 그 뜻을 표현 할 수는 있음.¹⁾

- 안 제7조의2제1항에서 “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” 를 “개인에게 수여한다” 로, 같은 조 제2항제2호 “문화체육부문” 을 “문화예술부문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“체육부문” 을 신설함.
- 안 제7조의2제3항에 기존 “부문별 시상인원은 개인 1인(단체를 포함한다)을 선정함을” 에서 “군민대상은 부문별 개인 1명 선정을” 으로, 기존 “수상부문” 을 “부문” 으로 규정함.
- 안 제9조는 제목을 기존 “포상절차” 에서 “포상대상자 추천” 으로 하고 “군의 담당관·과장” 을 “군의 부서장” 으로 하고, 기존 제9조제2항의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를 안 제9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부위원장을 기존 “포상업무담당 국장” 에서 “포상업무 담당 부서장” 으로 변경하였고, 기존 제9조제4항의 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안 제9조의3으로 신설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“5인 이상 7인 이하” 에서 “7명 이상 9명 이하” 의 위원으로 증원하여 규정함.

1) 출처:국립국어원 상담사례 모음(<https://korean.go.kr>)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수상 부분의 분야별 공적 세분화 및 심사위원회 분리·신설을 통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 <개정 2021. 10. 8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2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군민대상 심사위원의 개선의견을 검토·반영하고 포상 및 군민대상 시상상을 위한 위원회 관련 절차와 조례 내 일부 용어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평창군의 원활한 포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< 군민대상 심사위원 주요 개선의견 >

- (문화/체육부문 분할) 각 분야의 고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(단체 차원 접수 제한) 개인-단체 후보 간 경쟁은 불공평할 수 밖에 없고, 단체 간 과열 경쟁·갈등 조장 가능성이 있으며, 미선정에 따른 단체 사기 저하, '돌려먹기 식' 선정 의혹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2. 주요 내용

가. 용어 정비: 안 제5조, 제6조의2, 제7조의2, 제7조의3, 제8조 등

- 1) (기존) 각호의 1 → (개정) 각 호의 어느 하나
- 2) (기존) 범위안에서 → (개정) 범위에서

나. 군민대상 관련 개선의견 반영: 안 제7조의2, 제9조의3

- 1) 수상부문 세분화: (기존) 문화체육부문 → (개정) 문화예술부문 / 체육부문
- 2) 군민대상 수상단위 변경: (기존) 개인 또는 단체 → (개정) 개인
- 3) 군민대상심사위원 증원: (기존) 5명 ~ 7명 → (개정) 7명 ~ 9명

다. 위원회 관련 조항 분리·신설 및 위원 변경: 안 제9조2 ~ 제9조의3

1) (신설) 제9조의2(공적심사위원회), 제9조의3(군민대상심사위원회)

※ 기존 제9조(포상절차) 내 관련 항 분리 및 조 신설

2) 공적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변경

(기존) 포상업무 담당 국장 → (개정)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.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5. 11. 6. ~ 2025. 11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1606호 [행정담당관-27716(2025. 11. 27.)호]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8881(2025. 12. 1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8881(2025. 12. 1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통보 및 미반영 계획서 제출

[가족복지과-44181(2025. 12. 2.)호 / 행정담당관-28237(2025. 12. 3.)호]

• (개선의견) 군민대상심사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

• (미반영사유) 군민대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·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심사해야 하므로 성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9425(2025. 12. 9.)호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29(2026. 1. 5.)호]

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**”를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다음의**”를 “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**개인이나 단체에**”를 “**개인에게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**”를 “**각 호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체육**”을 “**예술**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체육부문

제7조의2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**수상부문**”을 “**부문**”으로 한다.

군민대상은 부문별 개인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 1**”을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**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**으로 한다**”를 “**에 따른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범위안**”을 “**범위**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포상대상자 추천)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·

사회단체장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

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.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공적심사위원회) ①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, 간사는 서무 담당으로 한다.

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9조의3(군민대상심사위원회) ① 제7조의2에 따른 군민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군민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.

③ 군민대상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<u>각 호의</u> 경우에 수여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제6조의2(공로장) 공로장은 <u>다음 의</u> 경우에 수여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제7조(상장) 상장은 <u>다음의</u> 경우 에 수여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제7조의2 (군민대상) ①군민대상 은 애향정신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<u>개인이나 단체에</u> 수여한다.</p> <p>②수상은 다음 <u>각호의</u>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문화<u>체육</u>부문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~ 4. (생 략)</p>	<p>제5조(표창장)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의2(공로장)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상장)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의2(군민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<u>개인에게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<u>예술</u>--</p> <p><u>2의2. 체육</u>부문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③ 부문별 시상인원은 개인 1인 (단체를 포함한다)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수상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의3 (모범공무원 포상)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.

1. ~ 2. (생략)

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별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.

제9조(포상절차) ①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군의 담당관·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, 유관기관의 장, 사회단체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.

③ 군민대상은 부문별 개인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 -----

----- 부문-----

제7조의3(모범공무원 포상) 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-----

-----에 따른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범위-----

제9조(포상대상자 추천)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 또는 유관·사회단체장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.

②포상은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. 간사는 서무담당 이 되고,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④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(이하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함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. 이 경우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의2제2항 규정의 수상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

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
촉한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
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
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9조의2(공적심사위원회) ① 제5
조부터 제6조의2까지 규정에 따
른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
기 위하여 평창군공적심사위원
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
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
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
7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소속
공무원 중에 성별 균형을 고려
하여 군수가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
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, 간사
는 서무담당으로 한다.

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
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
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9조의3(군민대상심사위원회) ①
제7조의2에 따른 군민대상 후보
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
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군민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.

③ 군민대상심사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.

관계 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 [법률 제19951호]

- 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가. 조례안명: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비용발생 요인: 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이 시 균
연락처	(033) 330 - 2210